Tax Indonesia / April 2018 / No.05

조기 세금 환급신청에 대한 신규 규정 Р1

TaxFlash



조기 세금 환급에 대한 신규 규정

재무부는 2018년 4월 12일에 조기 세금 환급과 관련한 신규 규정인 No.39/PMK.03/2018 (PMK-39)을 발표하였습니다. PMK-39는 조기 환급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간소화하였으며, 하기의 규정을 폐기하였습니다:

- 1. 부가세 조기 환급과 관련한 저위험 부가세 납세자(a low-risk VAT-able Enterpreneur)에 대한 재무부 규정 No.71/PMK.03/2010 (PMK-71);
- 2. 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한 재무부 규정 No.72/PMK.03/2010의 5조, 6조 및 7조;
- 3. 보세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부가세 조기 환급을 금지하는 재무부 규정 No.255/PMK.04/2011의18A조;
- 4. 소득세 및 부가세의 조기 환급이 가능한 Golden Taxpayer에 관한 재무부 규정 No.74/PMK.03/2012 (PMK-74);
- 5. 낮은 환급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의 조기 환급을 규정한 재무부 규정 No.198/PMK.03/2013 (PMK-198).

적용 가능한 납세자

신규 규정인 PMK-39에 따른 조기 세금 환급이 가능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Golden Taxpayers

1.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2.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하여 미납세액이 없어야 함. 다만, 미납세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 또는 지연납부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 3. 과거 3개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 4. 과거 5년간 조세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경우.

B. 낮은 금액의 환급 금액으로 인한 조기 환급가능한 납세자

- 1. 어떠한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 AITR)상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2.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개인이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상 소득세 환급금액이 IDR 100 million 이하인 경우(기존 규정상 IDR 10 million 이하);
- 3.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서상 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 경우(기존 규정상 IDR 100 million이하);
- 4.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이 부가세 신고서상 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 경우(기존 규정상 IDR 100 million이하).

C.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 (Low-risk VAT-able Entrepreneurs, Low-risk PKPs)

법인이 하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a) 수출활동;
- b)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부가세 징수자(VAT Collector)에게 공급하는 경우;
- c)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나,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기존에는 주식의 40%의 상장 요건이 있었음);
- 2. 법인의 대주주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인 경우;
- 3. 법인이 관세청의 최우선 파트너 지위가 있는 경우(Companies with a Priority Partner of Customs status);
- 4. 법인이 공인된 경제 운영자 지위자 있는 경우(Companies with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status);
- 5. 위의 $_{1}$) $_{1}$) 에서 언급한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법인 또는 생산법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며 직전 $_{12}$ 개월의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수행한 경우;
- 6. 법인이 IDR 1 billion 이하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또한, 법인은 조세범죄(tax crime) 및 조세수사(tax investigation)의 예비 증거로 인한 세무조사 과정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기존에는 24개월 이내), 과거 5년간 조세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적격한 납세자의 선정

납세자는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로 선정되기 위하여 관할 세무 관청을 통하여 ITO (Indonesian Tax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olden Taxpaer를 신청하는 법인은 반드시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ITO는 반드시 1달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Low-risk PKPs의 신청은 기한 제한없이 가능하며, ITO는 반드시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상기 사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동 혜택이 종료됩니다.

낮은 금액의 환급금액을 제출하는 납세자는 적합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기 세금 환급 신청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조기 세금 환급 지위의 취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승인받은 지위는 취소됩니다.

A. Golden Taxpayers

- 1.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지연 제출;
- 2. 연속되는 2 개월 이상 동일 세목의 월별 신고서의 지연제출;
- 3. 1년간 동일 세목의 월별 신고서를 3회 이상 지연출하는 경우;
- 4. 조세범죄 및 조세수사의 예비 증거로서의 세무조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B.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Low-risk PKPs)

- 1. 조세범죄 및 조세수사의 예비 증거로서의 세무조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 2. 조세범죄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 3.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기 세금 환급 프로세스

신청

조기 세금 환급신청은 적합한 세금 신고서의 환급신청란에 체크함으로써 신청이 됩니다.

조기 세금 환급신청 금액이 환급 승인 금액과 상이한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서한을 통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재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적정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한 검토

형식요건의 검토

DGT는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가 신청한 조기 환급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형식조건을 검토합니다.

	Golden Taxpayer	Low-risk PKP
적합한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checkmark	\checkmark
조세범죄 또는 조세수사의 예비 증거로서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지 여부 확인	V	√
동일 세목의 월별 신고서가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지연 제출되었는지 여부	\checkmark	
동익 세목의 월별 신고서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연 제출되었는지 여부	\checkmark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지연제출이 있는지 여부	\checkmark	
과거 5년간 조셈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		V

실질요건의 검토

모든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하여 실질요건의 검토가 하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Golden Taxpayer	Taxpayer with low refund value	Low-risk PKP
세금계산의 정확성	√	√	\checkmark
선납원천징수세의 영수증(slip)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V	V	
부가세 매입세액이 거래상대방이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	√	V
자가신고 부가세의 납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V	\checkmark	\checkmark
납세자가 등록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여부			√

조기환급 결정

상기의 검토결과에 따라, ITO는 조기 세금 환급 결정서(Surat Keputusan Pengembali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SKPPKP)를 하기의 기한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 Golden Taxpayer의 경우: 소득세는 3개월 이내, 부가세는 1개월 이내
- 낮은 금액의 환급 신청의 경우: 개인은 15영업일 이내, 법인은 1개월 이내
- Low-risk PKPs 경우: 1개월 이내

ITO는 납세자가 형식요건 또는 실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기환급 결정 후 세무조사

ITO는 조기환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부포지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행정벌과금이 부과됩니다:

- Golden Taxpayers의 경우: 추가 납부세금의 100%
- 낮은 금액의 환급신청의 경우: 추가납부 세금의 100%
- Low-risk PKPs의 경우: 월별 2%의 지연납부 가산세 (최대 48%)

특별조항

PMK-39은 조기 환급신청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특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Low-risk PKPs의 조항(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벌과금 규정 포함)은 납세자가 Golden Taxpayer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낮은 금액의 환급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2. ITO는 환급 포지션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적격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기본법(KUP) 17(1)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 3. ITO는 환급 포지션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세기본법 17B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 4. 조기환급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환급신청은 조세기본법 17B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과규정

PMK-39는 하기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 적격한 납세자가 Golden Taxpayer로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2018년 4월 12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TO는 반드시 신청서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2. ITO는 현재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의 지위를 가지는 납세자에 대하여 2018년 4월 12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지위를 재부여 할 수 있습니다.
- 3. 진행중인 조기 환급 신청은 PMK-71, PMK-74 또는 PMK-198에 따라 진행됩니다.
- 4. PMK-71, PMK-74 및 PMK-198의 시행규정은 PMK-39에 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유지됩니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 an. 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8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